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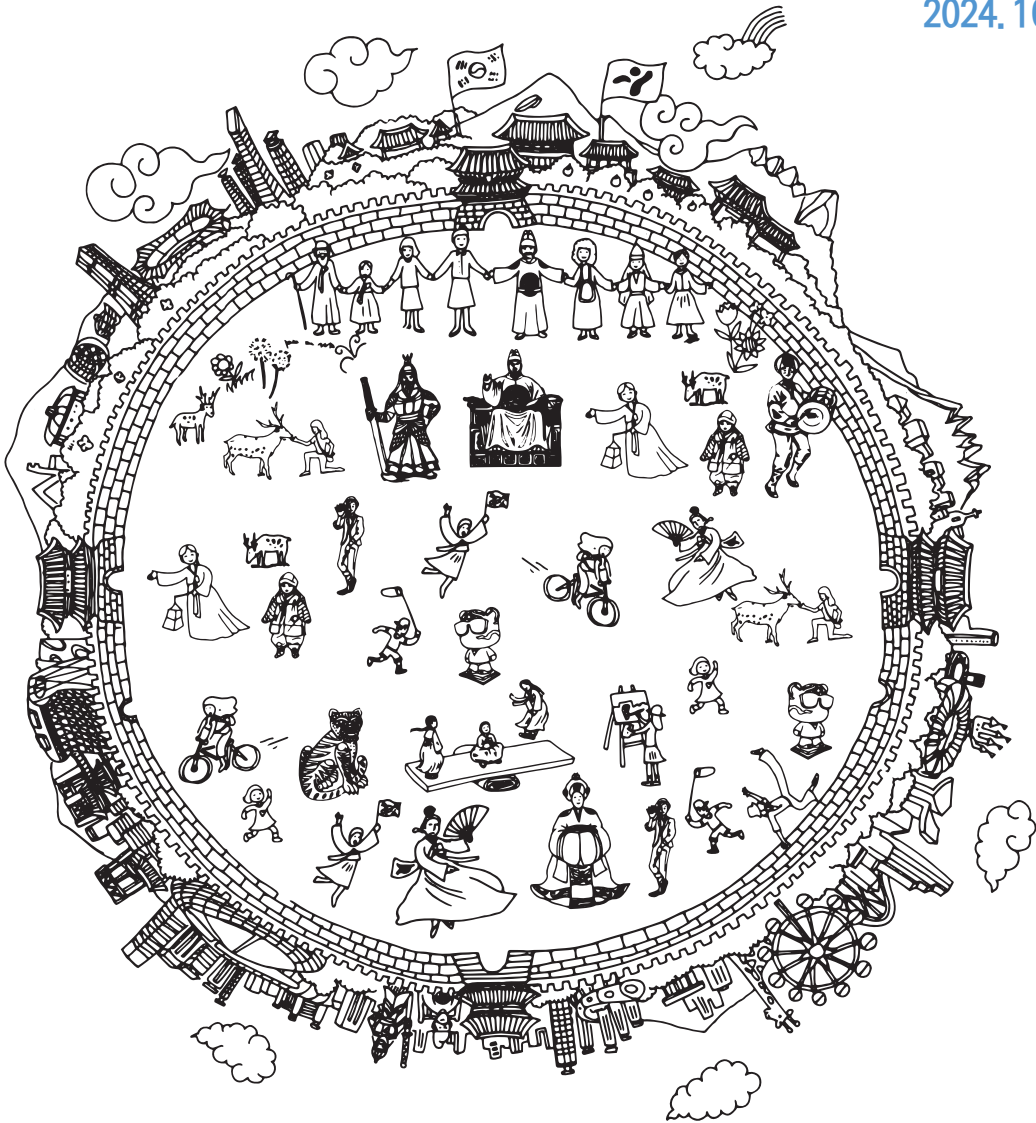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12호
2024. 10. 8.(화)



목 차

◆ 서울특별시교육청

[입법예고]

제2024-34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…… 2

서울특별시교육청**[입법예고]****◆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-345호****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10월 8일
서울특별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-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*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
*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(임기제 교육연구사) 정원 증원

2. 주요내용

-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 - 특정직 정원 조정: 증 154명
 - － 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 증 154명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※ 보내실 곳: 서울특별시교육청 (담당부서: 행정관리담당관)

○ 주소: 서울특별시 중로구 송월길 48 (신문로 2가)

○ 연락처: 전화 02-2282-8644, FAX 02-6973-9921

○ 이메일: jeunsan@sen.go.kr

4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[붙임]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722” 을 “7,876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588” 을 “742” 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7,876				
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7,125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44		33	11	
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7,040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			
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8				
4급상당	1		1		
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
특정직 계	742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1		29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691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	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총 계	7,722					총 계	7,876				
정무직 계	1					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	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7,125					일반직 계	7,125				
2·3급	1		1			2·3급	1		1		
3급	9		9			3급	9		9		
3·4급	3		3			3·4급	3		3		
4급	44		33	11		4급	44		33	11	
4·5급	7		7			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7,040					5급 이하 소계	7,040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				전문경력관 소계	7				
연구사 소계	14					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8					별정직 계	8				
4급상당	1		1			4급상당	1		1		
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
특정직 계	588					특정직 계	742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1		29	22		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1		29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537					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691				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

성 명 : (인) (단체인 경우) 단체명 : 대표자 성 명 :
주 소 : 전화번호 :

개정안	수정요구안	사 유
제0조(00)	제0조(00)	○ —

2024년 월 일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